

노익을 보호하는 힘,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 노인복지 이용시설 |
| 종사자 대상 교육교재 |

www.noinboho.or.kr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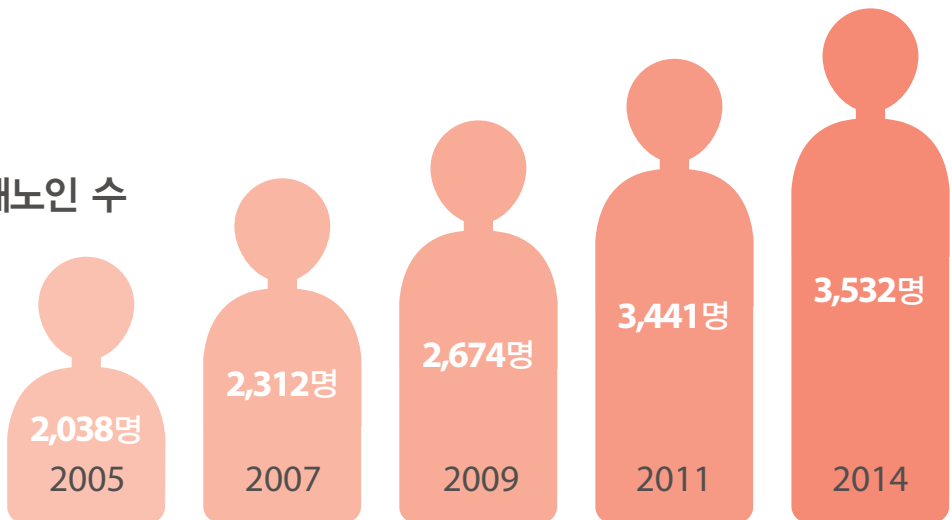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현황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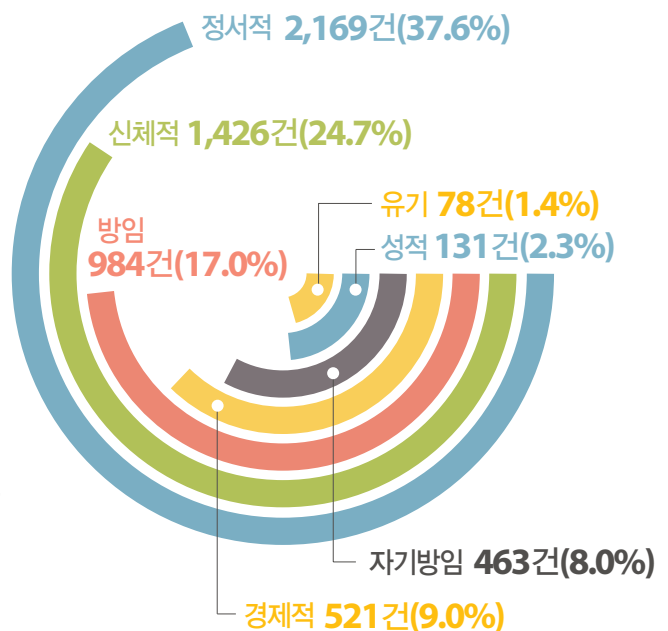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학대유형별
비율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라는 생각에
모른척 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나는 신고의무인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위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61조의2제2항).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보호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위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왜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인권 감수성”

- 사회적 약자는 권리 침해와 박탈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자를 위한 인권이 지켜지고 권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특히 학대피해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에 있기에 이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 사회구조적으로 상대적 약자(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나’의 인권도 보장될 것입니다.
-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BO

노인학대 알아보기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 ①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②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③ 성 적 학 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④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⑤ 방 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⑥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의 특성

- ①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노인학대가 있어 왔음
- ②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③ 반복성 : 노인학대는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발생함
- ④ 은폐성 : 신고를 꺼리며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노인에게 발견될 수 있는 신체적 학대 및 예측징후

D할아버지는 젊어서부터 할머니에게 술을 마시면 폭행을 일삼아 왔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도 술이 깨면 정말 다정한 남편이기에 할머니는 그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큰딸은 이런 사실이 동네에 소문이 나지 않도록 부모님을 거의 집에 가두어 놓는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어린 손녀들까지 때리려고 하여 집에 온 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예 측 징 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얼굴, 목, 팔, 다리 등 멍이나 할퀴 흔적, 화상 흔적, 묶인 흔적
- 외관상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서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없는 행동이나 활동수준의 변화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노인에게 발견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및 예측징후

최근 J할아버지의 표정이 부쩍 어두워 노인종합복지관 H사회복지사는 상담을 진행하였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소외감으로 힘들다며 아무도 본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 등 같이 살아도 혼자 살고 있는 느낌이라고 털어 놓으셨다. 따로 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나갈 수도 없고 손자들조차 자신을 본 척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보이셨다.

예 측 징 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무반응,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따돌림이나 소외되고 있음을 시설 종사자에게 고함
- 가족, 동료노인, 종사자 등이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무시하는 모습



노인에게 발견될 수 있는 성적 학대 및 예측징후

거동이 불편한 A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최근 손녀가 게임중독에 빠지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쏟아내곤 하였다. 손녀가 A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할머니의 신체를 빗대어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말들을 하였다. 다행히 상황을 목격한 장기요양요원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예 측 징 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을 보이거나 성병에 걸림
-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성기·항문부위 주변에 타박상이나 하혈
- 분노 또는 수치심을 보임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
- 성희롱에 대한 불쾌감을 직원에게 말함



노인에게 발견될 수 있는

경제적 학대 및 예측징후

S노부부는 부양을 전제로 큰아들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 시켜주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큰아들 내외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지 않고, 음식도 자기 식구들이 먹는 것보다 소홀히 대접하기 시작했다. 또한 할머니가 백내장 수술이 필요함에도 전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째 딸은 현재 부양비 청구 소송을 고려 중이고 이런 사실이 친척들에게 소문이 날까 창피하다며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에게 상담을 문의해왔다.

예 측 징 후

- 친척이나 가족이 도와준 대가로 노인의 연금의 일부를 가로챈
- 노인의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거나 체불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노인의 부양에 지나치게 많이 쓰인 비용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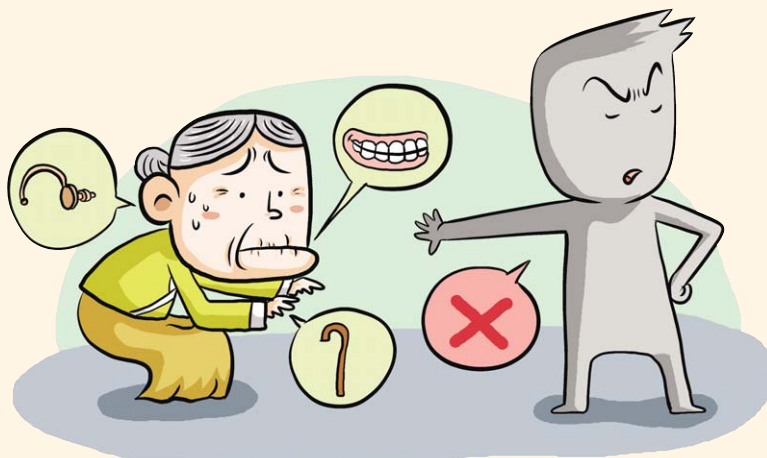


노인에게 발견될 수 있는 방임 및 예측징후

도시락 배달을 위해 E어르신 댁에 방문할 때마다 사회복지사는 마음이 좋지 않다. 악취가 나고 계절과 맞지 않은 옷가지들이 쌓여있는 등 불결한 환경에 살고 계신 데다가 심지어 상한 음식을 드신 흔적이 곳곳에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음식 양을 줄이고 있다고 하셨다. 사회복지사는 E어르신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색 중이다.

예 측 징 후

- 대·소변 냄새, 옷과 몸에서 악취가 나며 개인위생관리가 안된 상태
- 땀띠, 염증, 욕창, 이 등이 방치되어 노인의 건강에 위험한 상태
- 노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치료가 제공되지 않음
- 식사를 자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
- 복지관 및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를 스스로 거부함(자기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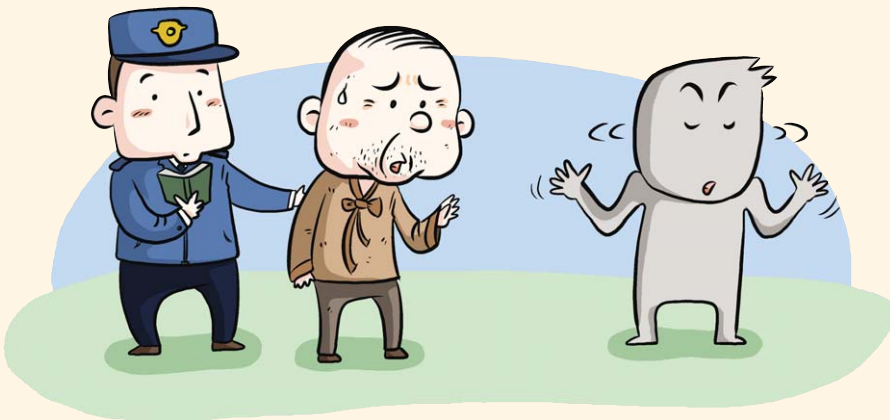


노인에게 발견될 수 있는 유기 및 예측징후

노부부는 몇 개월째 전기세가 밀려있고 할머니는 심각한 치매증상을 보이며 할아버지 역시 건강이 좋지 않다. 특별한 수입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돌봐주는 가족이 없다며 동네 이웃주민이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노부부와 함께 생활하던 아들은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자 부모를 버리고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 측 징 후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호互 호護 호好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¹⁾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노인복지 이용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복지 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노인과 관련된 가족, 동료노인, 외부인 뿐만 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의 장과 직원들이 노인학대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의 역할

▶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①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②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③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④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⑤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⑥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보건복지부(201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일부 발췌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를 위한 Tip

노인복지관에서

▶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관은 다수의 노인 이용시설이라는 특성에 따라 장시간 어르신들을 개별적으로 관찰하지 못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무자들은 노인학대에 대해 민감성을 키워야 하며, 특히 아웃리치사업(경로당 활성화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재가복지사업 등)에 배치된 직원인 경우에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성 질환(인지저하 및 치매증상)을 가진 어르신들의 증가로 인한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노인과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기본지식을 갖춰야하며, 노인의 이상행동에 대해 유심히 관찰하고 노인의 개별 특성에 따라 개입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 노인복지관에서 자주 일어나는 노인학대 유형이 있나요?

주로 정서적 학대사례가 발견되기 쉬운데 어르신들끼리 한 사람을 따돌린다거나 폭언 및 막말을 하는 경우 해당 어르신에 대해 적극적·즉각적인 개입, 상담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무자로서는 친밀감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어르신 입장에서는 듣기 거북할 수 있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오랜 기간 알아온 어르신이라도 반말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성희롱을 받아 불쾌감을 느꼈다는 경우도 가끔 보고되는 바, 특히 남자어르신들의 성적인 언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노인학대 예방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스스로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소송과 같은 법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금전적인 거래는 은행을 통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부모의 부양 등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인지가능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는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시설에서

▶ 재가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특히 유의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의택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정에서 이뤄지는 노인학대에 대해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행해진 노인학대는 부끄러운 가정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 부부간, 고령의 자식 및 며느리 등에 의한 노노(老老)학대의 경우 사례가 증가하는 바, 경미한 경우라도 즉시 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 어르신들끼리의 다툼, 폭언, 따돌림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힘쓰도록 하며, 신입 직원인 경우 필수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관소개

‘어떻게 도와줄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



사 례 적 용

- ①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한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이 배우자에 의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겪고 있는 것 같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함
- ② **사례접수**를 통해 학대행위자가 술을 마실 때마다 부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응급학대의심사례로 접수 판정**함
- ③ 신고접수 당일, **현장조사 및 사정**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상황과 학대행위자 및 자녀관련 **정보를 파악**함
- ④ **응급사례로 판정**되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을 위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일시 보호** 후, 사정을 통해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개선으로 목표 설정함
- ⑤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욕구에 따라 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이혼 절차 법률정보제공, 전문상담사와 심층상담, 심리치료, 부부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함
- ⑥ 학대행위자의 태도변화로 재학대 위험감소 및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변화, 건강개선 등의 확인을 통해 **사례평가 후 종결**함
- ⑦ 종결 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와 연계하여 학대피해노인 '부부관계개선프로그램'에 참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서로를 챙기며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학대행위자의 개선된 모습을 통해 **재학대 여부 확인**함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소개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실시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입소대상** : 만 60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소기간** : 3개월(부득이한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연장 가능)
- **서비스 내용**

- 법률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 학대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지원을 위한 가족상담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및 의식주 등 쉼터 생활 지원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지원
-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퇴소(최대 4개월 입소) 후

원가정 복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양로시설(52개소)로 연계하여 입소 지원



노인학대 없는 세상, 모든 세대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때, ☎**1577-1389**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짧은 전화 한 통이 학대로 고통 받는 어르신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Silver Smile이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생한 Silver Smile 브랜드는, 노인학대 없는 밝고 건강한 노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진리를 바탕으로 노인이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발행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서울시 마포대로 182-10(공덕동 105-155) 성촌빌딩 2층

전화 02-3667-1389 팩스 02-2634-5023

홈페이지 www.noinboho.or.kr 인쇄발행 2015년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